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214호 및 제20507호 공포, 2025. 2. 7. 시행) 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시행령 반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치료보호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치료보호기관 설치·지정 기준(안 제3조제2항·제3항)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나. 치료보호기관 평가·취소(안 제4조)

치료보호기관의 평가를 3년 마다 실시하고, 재지정 요건으로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준수 여부, 치료보호 실적,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여부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

다. 전문교육 개발·운영(안 제5조)

치료보호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구체화하고 진행 절차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치료보호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변경(안 제9조제3항)

현행 회의록 서식은 실제 시·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하는 것으로 현행에 맞춰 변경함

마. 마약류중독자 등 심의·관리주체 통일(안 제11조부터 제12조, 안 제14조부터 제19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시·도와 판별 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시·도가 달라 현장에 어려움 있어 마약류 중독자가 거주하는 시·도로 일원화하여 치료보호 비용 부담의 책임과 중독자의 지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바. 치료보호 의뢰처에 교정시설의 장 추가 및 지역 연계(안 제10조제2항)

교정시설 석방 시 치료보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출소자를 치료보호 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규정하여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

사. 판별검사 기준 완화(안 제13조)

현행 판별검사는 소변 또는 모발검사,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를 모두 실시하여 중독자를 판명하기에 현장에서 실제 준수하기 어려워 치료보호 활성화 및 현장의견 반영을 통해 판별검사의 기준을 완화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치료보호 기간 연장 요청 및 상태 보고 시점 현실화(안 제17조 및 제18조)

법령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치료보호 기간 종료 10일 전에 연장 요청하여 짧은 처리기한으로 인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개최가 어려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

자. 치료보호 완료된 중독자의 지역 재활기관 연계 강화(안 제19조)

중독자의 치료보호가 완료되었을 때 시·도지사는 중독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차. 치료보호 서식 현행화(별지 서식 전체)

기존 서식의 미비사항(전화번호, 생년월일, 치료보호기관 정보 등)과 현행 치료보호제도 운영에 맞춰 일부 서식을 추가(교정시설에 의한 치료보호 의뢰, 본인·보호자 등의 치료보호 신청, 치료보호 심사결과 통보,

치료보호 종료 통보 등) 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등)”을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4.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시설, 치료프로그램실 등 시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치료보호기관의 평가·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 대해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의 충족 여부
2.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3.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 이수 여부
4.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평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5항 및 제1항에 따라 재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전문교육 개발·운영)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개발·운영에 관

한 업무를 다음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정신병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 개발·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 개발·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에 대하여 전문교육 개발·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제7조(중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각 위원회의 기능) 법 제40조제10항에 따라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의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나.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나.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중전의 제6조)제4항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의 제목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을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료보호기관의”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로, “의뢰하고, 그 사

실을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의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을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한다)”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중독자등이 출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중독자등을 의뢰 또는 안내한다.

1. 치료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독자등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그 중독자등의 치료보호를 의뢰
2. 그 외 중독자등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그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 그 사실과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

제12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의뢰·통보”를 “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를 “시·도지사”로,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을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그 중독자들의 판별 검사 또는 치료보호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의 제목“(판별검사의 기준 등)”을“(판별검사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기준에 따라야”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심리검사”를 “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을 “중독자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으로,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신청에 따라 판별검사한 경우에는 중독자등 본인과 보호자에게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판별검사 결과를 통보 해야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40조제7항”으로,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으로, “마약류중독자”를 “마약류중독자(이하 “중독자”라 한다)”로, “하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독자가 치료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그 일시·장소 및 사유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독자의 보호자가 치료보호를 신청한 경우:

치료보호를 신청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중독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 다음 순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배우자

나. 부모

다. 부모 외의 직계존속

라. 법정대리인

③ 각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자를 치료보호한 기간에 대한 비용을 국가 및 시·도가 부담한다.

④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제1항 중 “마약류중독자가 제3조제1항”을 “중독자가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5조제1항제3호”를 “제7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마약류중독자의”를 “중독자의”로, “마약류중독자를”을 “중독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제2항제1호”를 “제7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제1항 중 “마약류중독자가 제13조”를 “중독자가 제15조제1항”으로, “10일”을 “1개월”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그 중독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연장을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0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중독자등을”을 “중독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0조제3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그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7조)의 제목 “(치료 상태 보고)”를 “(치료보호 결과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13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제16

조”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제17조”로, “제18조”를 “제19조”로, “10일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을 “1개월 이전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상태”를 “그 중독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중독자의 치료보호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10일 이전”을 “1개월 전”으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중독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로,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그 중독자 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

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호서식(중전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중전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중전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전의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치료보호 의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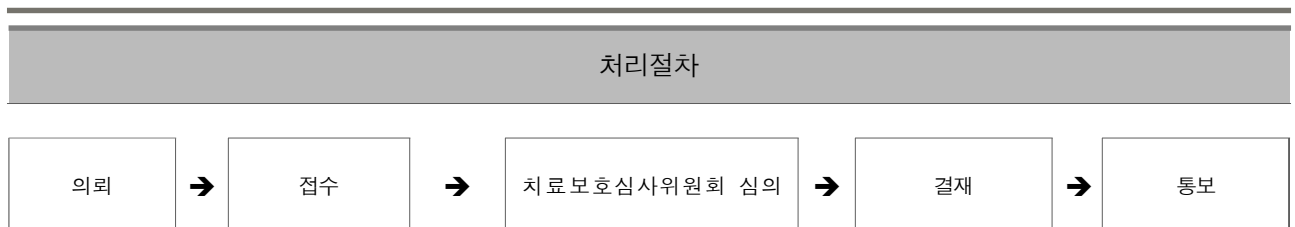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용·중독 마약류		사용기간
의뢰인 (검사)	성명	소속기관명	전화번호
	의뢰사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 보호([]입원, []통원)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치료보호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마약류중독자 등 치료보호 의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용·중독 마약류		사용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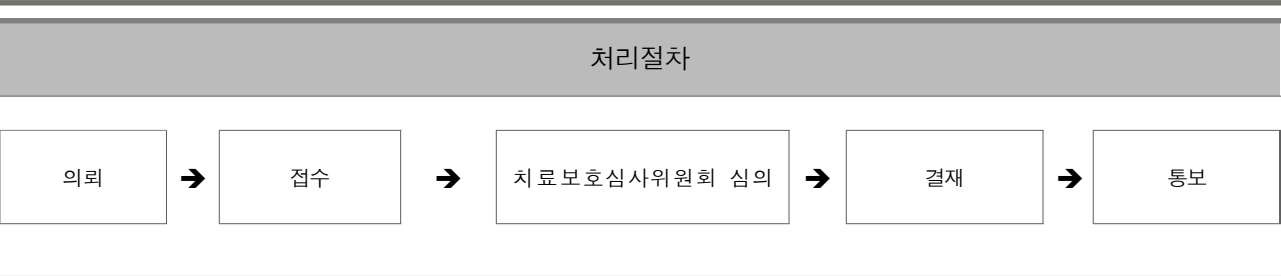
의뢰인 (교정시설)	성명	소속기관명	전화번호
	의뢰사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등의 치료보호([]입원, []통원)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치료보호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마약류중독자 등 출소 사실 통보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사용·중독 마약류		출소일

통보인 (교정시설)	성명	소속기관명	전화번호
---------------	----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등의 교정시설 석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치료보호 신청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청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용·중독 마약류		사용기간

신청인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등의 []판별검사 또는 [] 치료보호([]입원, []통원)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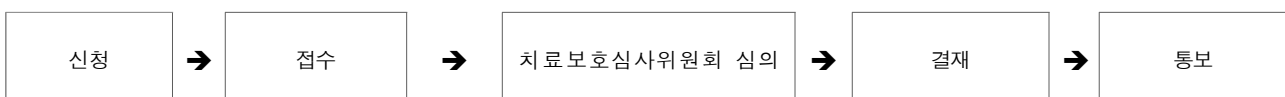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도지사, 치료보호기관의 장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판별검사·치료보호 심사 결과 통보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남, 여)	
치료 보호 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심사 결과	[]승인 []불승인 []보류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 불승인 및 보류 시 사유 기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2조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 판별검사 또는 [] 치료 보호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도지사

직인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도지사, 치료보호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 · 통보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사용 · 중독 마약류		
	판별검사 결과		
치료 보호 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를 보고 ·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직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도시자 또는 치료보호 신청자 귀하

첨부서류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통보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중독 마약류
	치료보호 사유		
치료 보호 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실시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직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도지사 또는 치료보호 신청자 귀하

첨부서류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연장 요청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기존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치료보호 시작일) ~ 년 월 일		
	연장 요청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 중독 마약류
	연장 필요 사유		
치료 보호 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연장을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직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연장심사 결과 통보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남, 여)	
치료 보호 기관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심사 결과	[]승인 []불승인 []보류		
	기존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치료보호 시작일) ~ 년 월 일		
	연장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불승인 및 보류 시 사유 기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연장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도지사

직인

치료보호기관의 장, 치료보호 신청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결과 보고 · 통보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치료보호 기간 년 월 일(치료보호 시작일) ~ 년 월 일		
	치료 상태		
치료 보호 기관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직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도지사, 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등) ① (생략)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다음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다음 각 호----- ----- ---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2. (생략) <u><신설></u>	2.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시설, 치료프로그램실 등 시설

3. (생략)

<신설>

③ (생략)

<신설>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조(치료보호기관의 평가·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 대해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의 충족 여부

2.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3.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 이수 여부

4.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평가에 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5항 및 제1항에 따라 재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여부 및 제2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전문교육 개발·운영) ①

<신 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 6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정신병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마약류 중독자 관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 개발·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 개발·운영을 위

제4조 · 제5조 (생략)

제5조(각 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 · 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

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에 대하여 전문교육 개발 ·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제6조 · 제7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제7조(각 위원회의 기능) 법 제40조제10항에 따라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의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나.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 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 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 · 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치는 사항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 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 검사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마.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나.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5급 -----

-----.

⑤ ~ ⑦ (생략)

제7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 ①·② (생략)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특정인의 치료보호 또는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① 검사는 마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1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신청) ① -----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

----- 의뢰 -----.

②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중독자등을 석방할 때에는 그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③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②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중독자등이 출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중독자등을 의뢰 또는 안내한다.

1. 치료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독자등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그 중독자등의 치료보호를 의뢰

2. 그 외 중독자등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그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 그 사실과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

③ -----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한다)-----
-----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삭 제>

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의 의뢰·통보 및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의뢰·통보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한 후에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제12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제11조 제1항-----

----- 의뢰-----
-----.

②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그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해야 한다.-----

-----.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독자등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그 일시·장소 및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하고,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중독자등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한 경우: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중독자등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 다음 순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배우자

나. 부모

다. 부모 외의 직계존속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그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라. 법정대리인

④ 각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독자등을 치료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한 기간에 대한 비용은 국가 및 시·도가 부담한다.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판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금단 증상 또는 신체적·정신적 의존 증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해당 치료보호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삭 제>

제13조(판별검사의 기준) ① ----
----- 제12조제1항-----
-----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야 -----
-----.

1. (현행과 같음)

2. -----
----- 진단 -----

② ----- 제12조제1항-----

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
행한 진단서에 따라 마약류중독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별검사
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판별검사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별검사 의뢰에 따라 판별검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판별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치료보호의 실시)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중독

-----.

제14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①

-----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 별지 제3호서식-----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 한다.

② ----- 제11조제1항-----

----- 별지 제3호서식-----

-----.

제15조(치료보호의 실시) ① 법 제40조제7항-----

-----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 마약류중독

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자(이하 “중독자”라 한다)-----

----- 한다.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독자가 치료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그 일시·장소 및 사유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독자의 보호자가 치료보호를 신청한 경우: 치료보호를 신청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중독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 다음 순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배우자

나. 부모

<신 설>

<신 설>

제14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치
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
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치유하
기 위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보호 특례) ① 시·도지사는 중
증 마약류중독자가 2개월 이상
의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그 마약류중독자가 제3조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 부모 외의 직계존속

라. 법정대리인

③ 각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독
자의 치료보호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기 전에 치료보호기관
에서 중독자를 치료보호한 비용
은 국가 및 시·도가 부담한다.
④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중독자
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
다.

<삭 제>

제16조(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보호 특례) ① -----

----- 중독자가 제3조제1항-----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 마약류 중독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보호기관의 병상 규모, 의료인력 및 입원할 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중증 마약류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5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② -----

-----, -----
----- 제7조제1항제3호-----

-----.

③ -----

----- 중독자의 -----

----- 중독자를 -----

-----.

④ -----

----- 제7조제2항제1호-----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 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가 제13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치료보호를 계속하여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신 설>

-----.

제17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①

----- 중독자가 제15조제1항-----

----- 1개월 -----

--- 그 중독자의 거주지를 관찰하는 시·도지사에게 연장을 요청-----.

② -----
시·도지사-----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그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

③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들을 치료보호한 기간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총치료보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치료 상태 보고) ① 치료 보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제16조에 따라 치료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약류중독자가 완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2조제2항 -----

중독자를 -----

-----.

⑤ -----

--- 제15조제2항-----

---.

제18조(치료보호 결과 보고) ① -----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제17조-----

----- 제19조-----
---- 1개월 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 그 중독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중독자의 치료보호 결과-----

---.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해당 검사에게도 치료 상태를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치료보호의 종료)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를 종료해야 한다.

1. 2. (생략)
3.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4. (생략)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를 종료한 때에는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 제11조 제1항-----

----- 1개월 전 -----

-----.

제19조(치료보호의 종료) ① 치료보호기관-----

-----.

1.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1항 -----

4. (현행과 같음)

② -----

----- 중독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

--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그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③ (생 략)	<u>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u> <u>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u> 또 <u>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u> <u>---</u>.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연 락 처	(044) 202 - 3871